

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의안번호	23 - 04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0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건 명

-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2. 제안 이유

- 이대역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, 분리되어 관리중인 도시철도 시설 일원화 및 기 결정 시 누락된 변전실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으로,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

3. 이대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가. 결정개요

- 위 치: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80 일대
- 내 용: 도시철도 시설 일원화 및 누락된 변전실 부지 포함 도시계획시설(도시철도) 결정(변경)
 - 도시계획: (도시계획시설)도시철도, (용도지역·지구)제3종일반주거지역
 - 면적/지목: 10,234.8㎡/도로 13필지(97.29%), 대지 1필지(2.71%)
 - 소 유 자: 국유지(7,798.4㎡, 76.19%), 시·도유지(2,436.4㎡, 23.81%)
- 추진경위
 - 1977. 12. 01.: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최초 결정 A=3,400㎡ (건설부고시 제232호)
 - 1979. 09. 24.: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변경 결정 A=5,000㎡ (건설부고시 제349호)
 - 1980. 06. 05.: 도시계획시설(변전소 및 환기실) 최초 결정 A=1,567㎡ (서울특별시 고시 제191호)
 - 1981. 04. 24.: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지적 승인 A=5,000㎡(서울특별시 고시 제146호)
 - 1984. 05. 22.: 이대역사 개통 (서울대입구 ↔ 을지로입구)
 - 2022. 12. 19.: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(서울교통공사 → 마포구)

나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1) 철도(2호선 본선)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		규모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
기정	철도	도시철도 (지하철2호선)	중구 서소문로 127	중구 서소문로 127	시청, 강남 사당, 신도림 신촌	연장: 60.35km 폭: 17~65m	건설부고시 제203호 (1975.12.20.)	본선 48.8km 성수지선 5.4km 신정지선 6.15km

※ 전체연장은 서울시고시 제181호(1980.5.), 제505호(1982.12.9.), 제326호(1983.6.30.), 교통부고시 제90-36호(1990.12.31.)

2) 철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폐지	철도	고속철도 (변전소 및 환기실)	대흥동 2-77 외 10필지	1,567.0	감)1,567.0	-	서고191호 (1980.6.3.)	-
변경	철도	도시철도 (정거장)	마포구 신촌로 180 일대	5,000.0	증)5,234.8	10,234.8	건고제232호 (1977.12.1.)	-

-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폐지	철도 (변전소 및 환기실)	· 시설 폐지 : 감)1,567.0m ²	· 분리되어 관리중인 도시철도 시설 일원화를 위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폐지
변경	철도 (도시철도)	· 면적 변경 : (기정)5,000.0m ² (변경)10,234.8m ² 증)5,234.8m ²	· 이대역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, 도시철도 시설 일원화 및 기 결정 시 누락된 변전실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
		· 세부시설 변경 : (기정)고속철도 (변경)도시철도	· 「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」(시행 1992.12.16.) 개정 이후, 종전 '고속철도'에서 '도시철도'로 세부시설 명칭 변경

4. 상정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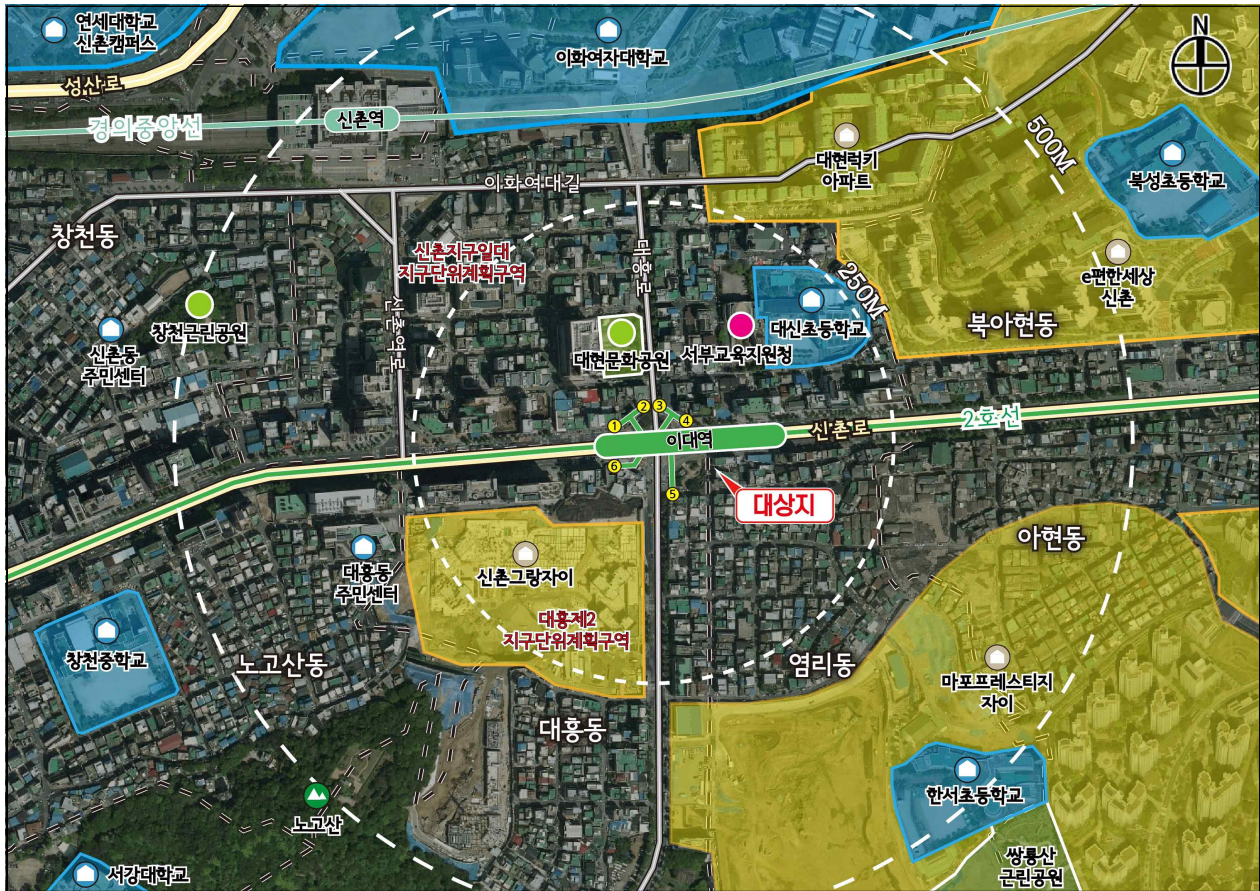
- 가. 대상지는 고속철도(부대시설), 고속철도(변전소 및 환기실)로 분리되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, 고속철도(부대시설)는 변전실 일부 부지가 누락되어 결정됨
- 나. 역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대역사 현황에 맞춰 도시철도 시설 일원화 및 기 결정 시 누락된 변전실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하는 사항임
- 다. 구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(변경) 할 예정임.

5. 주민공람 실시

- 가. 공람기간 : 2023. 01. 05. ~ 2023. 01. 20. (15일)
- 나. 공람의견 : 별도 의견 없음

6.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

○ 위 치 도



○ 현 황



○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○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